

# 포항 중성리신라비 비문의 형식과 분쟁의 성격

박성현\*

1. 머리말
2. 비문의 해석과 형식
3. 분쟁의 내용과 성격
4. 맺음말

## 1. 머리말

2009년 5월 포항 중성리신라비(이하 중성리비)가 발견되고 2년여에 걸쳐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sup>1)</sup> 비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논의가 잘 모아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전문연구원

1) 비가 발견되고 먼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2009. 9. 3). 여기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은 아래와 같다.

선석열, 2009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금석학적 위치」 『浦項 中城里新羅碑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이하 같은 책); 권인한, 2009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어문학적 검토」; 이우태, 2009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건립 연대와 성격」; 고광의, 2009 「포항 중성리신라비 서체와 고신라 문자생활」 다음으로 한국고대사학회에서 비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2009. 10. 7~8),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한국고대사연구』 56에 수록되었다.

李文基, 2009 「포항中城里新羅碑의 발견과 그 의의 : 「冷水里碑」의 재음미를 겸하여」 『한국고대사연구』 56(이하 같은 책); 배용일,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발견경위와 고대의 포항과 흥해」; 전덕재,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내용과 신라 6부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강중훈,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내용과 성격」; 하일식,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와 신라 관등제」; 李泳鎬, 2009 「興海地域과 浦項中城里新羅碑」

한국고대사학회에서는 이듬해 학술대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하였으며(2010. 4. 10),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아래와 같이 간행되었다.

金昌錫, 2010 「新羅 法制의 형성 과정과 律令의 성격 :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58; 朱甫暎, 2010 「浦項 中城里新羅碑에 대한 研究 展望」 『한국고대사연구』 59; 노태돈, 2010 「포항중성리신라비와 外位」 『한국고대사연구』 59; 노중국, 2010 「포항중성리비를 통해 본 麻豆干 시기 신라의 분쟁처리 절차와 六部체제의 운영」 『한국고대사연구』 59; 이용현, 2010 「중성리비의 기초적 검토 : 냉수리비·봉평비와의 비교적 시점」 『포항 중성리 신라비 고찰』(제113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 발표회)

그 외에 개별적으로 발표된 논문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판독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즉 판독되지 않는 글자는 많지 않은 반면, 인명의 나열이 많고 동사가 적은 문장 구조 때문에 끊어 읽고 해석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고위 인사가 敎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敎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대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敎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비문에서 敎의 내용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은 비문의 형식이 敎 자체를 정확하게 기록하기보다는 敎를 포함하여 어떤 일을 처리한 절차를 기록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유념하여 비문을 해석하고 그 형식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비문에 보이는 분쟁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이었던지 당시의 정치·사회상과 관련지어 제시하도록 하겠다.

## 2. 비문의 해석과 형식

중성리비 비문의 형식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가 敎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포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먼저 판독문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비문의 앞에서부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중성리비는 깨진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판독이 가능하며 논란도 적은 편이다. 판독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를 분석하면서 간단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1행: 辛巳...<sup>2)</sup>(中, 只?)<sup>3)</sup>折盧(ㄴ)...

2행: 喙部 習智 阿干支 沙喙 斯德智 阿干支

3행: 敎 沙喙 尔抽智 奈麻 喙部 卒智 奈麻 / 牵车子

선석열, 2009 「인명표기방식을 통해본 포항 중성리신라비」 『인문학논총』 14-3 ; 金昌錫, 2009 「포항 中城里新羅碑에 관한 몇 가지 고찰」 『韓國史研究』 147 ; 김희만, 2009 「浦項 中城里新羅碑와 新羅의 官等制」 『東國史學』 47 ; 박남수, 2010 「浦項 中城里新羅碑의 新釋과 지증왕대 정치 개혁」 『한국고대사연구』 60 ; 박남수, 2010 「浦項 中城里新羅碑에 나타난 新羅 六部和 官等制」 『史學研究』 100

2) 깨진 부분으로 2~3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3자가 들어가기에는 좀 좁지 않을까 한다.

3) 우측이 반 정도 깨진 '口'자 아래로 '丨'획이 있는 것으로 '中'으로 읽기도 하고 '只'로 읽기도 한다.

- 4행: 喙 沙利 夷斯利 白 / 爭人 喙評 公斯弥 沙喙 夷須 牟旦  
 5행: 伐喙 斯利 壹伐 皮末智 牟波喙 柴 干支 弗乃 壹伐 金評  
 6행: □<sup>4)</sup> 干支 祭智 壹伐 / 使人 奈蘇毒只道使 喙 念牟智 沙  
 7행: 喙 鄒須智 世令 干<sup>5)</sup>居伐 壹斯利 蘇豆古利村 仇鄒列支  
 8행: 干支 沸竹休 壹金知 那音支村 卜岳 干支 走斤 壹金知  
 9행: 珍伐 壹昔 云 豆智 沙干支宮 日夫智宮 奪尔 今更還  
 10행: 牟旦伐喙 作民 / 沙干支 使人 果西牟利 白口 若後世更  
 11행: 善人者 與重罪 / 典書與牟豆故記 /  
 12행: 沙喙心刀里 □ /
- \*띄어쓰기와 문장 구분(/)은 필자의 안

1행에는 먼저 ‘辛巳’라고 하는 시점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뒤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즉 깨진 부분 다음 글자를 ‘申’으로 읽어 ‘辛巳(年)~月申’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只’로 읽어 ‘只折盧葛文王’, 즉 지증왕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6)</sup> 이 경우 비문의 연대가 501년으로 분명해지고, 2행에 나오는 두 아간지 앞에 ‘只折盧 葛文王’이 놓여지면서 3인이 敎의 주체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글자를 ‘只’지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우며, ‘(一)’ 이하가 반드시 ‘葛文王’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2행에 보이는 ‘沙喙 斯德智 阿干支’가 냉수리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sup>7)</sup> 비문에 보이는 용어 등이 냉수리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비문의 건립 연대 ‘辛巳’년은 50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줄을 바꿔 2행에는 2인의 아간지가 나오고, 다시 줄을 바꿔 ‘敎’라고 하는 동사가 나온다. 2인의 아간지 앞에 갈문왕이 있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은 교의 주체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敎’ 아래에는 2인의 나머지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뒤의 ‘本牟子’는 술어라기보다 그 뒤에 나오는 2인의 역할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인의 나머지는 교를 받는 객체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sup>8)</sup> ‘敎’ 다음에 그 내용도 없이 교를 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교가 내려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술한 것

4) ‘沙’로 읽기도 하였지만 분명하지 않다.

5) ‘干’로 읽기도 하지만, 빠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발원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李成市가 제안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연구에서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전덕재, 앞의 논문(2009), 89~91면; 李泳鎬, 앞의 논문(2009), 228면; 이용현, 앞의 논문(2010), 23~24면.

7) 다만 ‘德’자의 판독이 분명하지 않고, 냉수리비에는 ‘斯’자가 이체자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8) 李文基, 앞의 논문(2009), 14~15면; 강중훈, 앞의 논문(2009), 147~148면.

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뒤의 ‘本牟子’ 2인은 ‘白’이라는 동사의 주체가 되어야 하겠지만, ‘白’ 다음 ‘爭人’ 이하의 인명을 사퇴했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말했고 ‘爭人’ 이하가 별도의 내용이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爭人’ 이하의 인명을 사퇴했다는 것을 특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들이 교가 내려지기 전에 분쟁의 사안을 조사해서 보고한 것으로 생각된다.<sup>9)</sup>

다음으로 ‘爭人’ 8인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다툼 사람들’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6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소속 部를 파악하는 방식에서는 논란이 있다. 그 논점은 ‘牟且伐喙’를 6부의 하나로 볼 수 있는가,<sup>10)</sup> ‘評’을 部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모단벌훼’는 합쳐서 6부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모단벌’은 대체로 지명으로 보이는데, ‘모단벌’과 ‘훼’를 분리할 경우 지명+부명이 되어 성립하기 어렵다. 또 비문에는 ‘모단벌’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훼’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모단벌훼’로 합쳐 보아야 하며, 그것은 같이 나오는 훼, 사훼, 본과훼와 같이 6부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1)</sup>

문제는 ‘評’인데 『양서』 신라전에 나오는 ‘6喙評’을 근거로 ‘喙評’을 훼부의 이표기로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 ‘金評’을 6부의 하나인 사피부로 보기도 하였다.<sup>12)</sup> ‘喙評公斯弥’에서 ‘喙’만을 부명으로 읽으면 ‘評公斯弥’가 남는데 이것은 4자 인명으로 볼 수도 있고 ‘評公’과 ‘斯弥’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당시 4자 인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 글자씩 나누어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데 앞의 ‘評公’은 고유명사 인명보다는 오히려 한자어 職名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직명은 부명 앞에 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評公’을 직명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된다.<sup>13)</sup> 그렇다면 ‘喙評’을 부명으로 끊어 읽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는데, 이 경우 ‘公斯弥’가 인명으로 남게 된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이처럼 ‘喙評’을 부명으로 읽을 수 있다면, ‘金評’ 역시 부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金

9) 선석열은 牟를 眸(눈동자)와 같은 것으로 보아 牟子를 감시자, 조사자의 역할로 이해하였다(선석열, 앞의 논문(2009), 42면).

10) 모단벌과 훼를 분리해서 보는 견해(선석열, 이우태, 강중훈), 모단벌과 훼를 합쳐서 6부의 하나로 보는 견해(권인한, 이문기, 전덕재, 하일식, 이영호, 김창석, 이용현 등)로 나누어진다.

11) 모단벌훼는 대체로 사서에 나오는 牟梁部로 간주되는데 봉평비에는 모량부가 ‘牟喙部’로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같은 부의 이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2) 전덕재는 ‘喙評’을 喙, 喙部의 이표기로 이해하였으나, ‘金評’을 6부의 하나로 보지는 않았다(전덕재, 2009 앞의 논문, 102~105쪽). 이용현은 ‘金評’을 6부의 하나인 斯彼部, 즉 習比部로 간주하였다(이용현, 2010 앞의 논문, 31~39쪽).

13) 그와 같은 사례로는 냉수리비의 ‘喙 耽須道使 心營’ 정도가 있을 뿐이다.

評'은 斯彼部로 비정되었다. 그렇게 되면 쟁인 8인은 휘평 1인, 사훼 1인, 모단별 휘 2인, 본과휘 2인, 금평(사피부) 2인이 된다.

'爭人' 8인의 구성을 이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면, 이들을 분쟁의 당사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분쟁은 대체로 휘 또는 사훼와 모단별휘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적어도 본과휘 간지 이하는 비문에 나오는 분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爭'한 것은 판결을 위한 논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는 분쟁의 당사자가 속해 있는 부뿐만 아니라 기타 부의 인사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냉수리비 및 봉평비의 敎 집단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기도 한다.<sup>14)</sup> 이들은 '本牟子' 2인의 조사 보고를 바탕으로 下敎에 앞서 논쟁을 벌임으로써 판결에 관여하였을 것이다.

결국 아직까지도 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누가 누구에게 교했다', '본모자 ~가 사되었다', '쟁인은 누구였다'는 식으로 관여자들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使人' 두 사람이 등장한다. 적어도 이들 중 한 명이 '奈蘇毒只道使'라는 점에서 지방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 또는 대상물이 있는 지역, 대체로 흥해 지역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슌'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使人 奈蘇毒只道使 喙 念牟智 沙喙 鄒須智 世舍 (干居伐 壹斯利 蘇豆古利村 仇鄒列 支 干支 沸竹休 壹金知 那音支村 卜岳 干支 走斤 壹金知 珍伐 壹昔 云) 豆智 沙干支 宮 日夫智宮 奪尔 今更還 牟旦伐喙 作民 / 沙干支 使人 果西牟利 白口 ~

\*밑줄은 동사

사인 두 사람이 '世舍', 즉 '세상에 명령했다'는 것인데, '干居伐' 이하의 지방인명은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云'과 묶어 볼 수 있을 것이다. '世舍'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豆智 沙干支宮'과 '日夫智宮'이 등장하고 있다. 이때 '宮'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奪'의 주체인지, 대상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干居伐' 이하의 지방인명과 '云'을 주술 관계로 묶는다면, 두 '宮'은 자연스럽게 '奪'의 주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奪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냉수리비에 보이는 '證尔'가 주목된다.

14) 냉수리비는 사훼, 휘, 본과, 사피, 봉평비는 휘, 사훼, 본과, 잠휘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뒤의 <표 2>, <표 3> 참조).

用前世二王教 爲證尙 取財物 盡令節居利得之 教耳 (냉수리비)

밑줄 친 부분에서 ‘用~爲~’는 ‘~을 ~으로 삼다’는 문장 구조로 파악되는데, ‘教를 證尙로 삼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證尙’는 ‘증거’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며, 문장 구조에서 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奪尙’ 역시 ‘奪’의 명사형, 즉 ‘빼앗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두 궁이 빼앗은 것’을 ‘지금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빼앗은 것’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을 한정시켜 주는 것이 바로 ‘干居伐 ~ 云’이라고 생각된다. ‘빼앗은 것’, 즉 분쟁의 대상은 바로 흥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증언해주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干居伐’ 이하의 인명은 네 지역 출신 6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sup>16)</sup> 간거벌, 소두고리촌, 나음지촌, 진벌은 흥해 인근 지역으로 추정되며,<sup>17)</sup> 분쟁 대상물이 걸쳐 있었던 곳으로 이해된다. 이 지역의 간지급을 포함한 유력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지고 분쟁의 대상물을 명시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누구에게 다시 돌려보내냐는 것, 즉 분쟁의 다른 당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牟且伐’ 이하를 어떻게 끊어 읽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가 제시되어 있다.

첫째, ‘今更還’까지 끊어 읽는 것이다.<sup>18)</sup> 이 견해에서는 누군가가 ‘豆智 沙干支宮’과 ‘日夫智宮’을 빼앗은 것으로 보았고, 당연히 두지 사간지와 일부지에게 돌려주라고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둘째, ‘牟且伐’까지 끊는 것이다.<sup>19)</sup> 이러한 견해에서는 6부의 하나로서의 ‘牟且伐 喙’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비문에는 모단벌이 두 차례 나오는데 모두 휘가 붙어 있다. 특히 첫 번째 나오는 모단벌휘는 띄어 읽을 경우 지명+부명+인명이 된다는 점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셋째, ‘牟且伐喙 作民 沙干支’까지 끊어 읽는 것이다.<sup>20)</sup> 즉 모단벌휘 작민 사간지

15) 노중국, 앞의 논문(2010), 66-68면에서도 이들을 증인으로 이해하였다.

16) ‘蘇豆’를 별도의 인명으로 간주할 경우 7인이 될 것이다.

17) 전덕재는 나음지촌을 東仍音縣(神光縣, 포항시 신광면)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전덕재, 앞의 논문(2009), 96면).

18) 전덕재, 김창석

19) 선석열, 이우태, 강중훈, 하일식, 김희만

20) 권인한, 노태돈, 노중국

에게 돌려주라는 것이고, 다음 문장에서는 ‘使人 果西牟利’가 ‘白口’의 주체가 된다. 여기에서 우선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냉수리비, 봉평비 단계에는 휘부·사 휘부 인사만이 분화된 관등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이다.<sup>21)</sup> 그리고 무엇보다 ‘作民’과 같은 한자어를 인명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끊어 읽는 것은 사실 그 다음 구절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데, ‘白口’의 주체를 국가에서 파견한 사인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앞에 나온 사인은 나소독지도사였는데, 과서모리라고 하는 제3인의 사인이 등장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가 ‘습’하지 않고 ‘白口’, 즉 입으로 사되는 방식<sup>22)</sup>으로 이야기한 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넷째, ‘牟且伐喙 作民’까지 끊고 ‘沙干支 使人 果西牟利’를 ‘白口’의 주체로 이해하는 방식이다.<sup>23)</sup> 이때 ‘作民’은 인명보다는 경작민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단벌회의 작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이 되며, 모단벌회의 작민 또는 모단벌회가 다른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뒤의 ‘沙干支 使人 果西牟利’는 두지 사간지의 사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비문에서 사간지는 한 명만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왜 잘못을 저지른 두지 사간지의 사인이 ‘만약 후세에 다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죄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는 점이다.<sup>24)</sup> 이 부분은 오히려 비문의 내용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沙干支 使人 果西牟利 白口 若後世更嚮人者 與重罪

즉 두지 사간지의 사인 과서모리가 ‘만약 후세에 다시 말하는 자가 있으면 중죄를 줄 것이다’라고 입으로 □ 사되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은 냉수리비 등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공포로 이해하였다. 그렇지만 중성리비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냉수리비의 관련 부분이다.

2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단벌회 작민사 간지’로 끊어 읽는 견해도 제기되었다(노중국, 앞의 논문(2010), 68~70면).

22) 이용현, 앞의 논문(2010), 46면.

23) 이문기, 이영호

24) 노태돈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넷째보다는 셋째 견해를 잠정적으로 취하였다(노태돈, 앞의 논문(2010), 40~42면).

別教 末鄒 斯申支 此二人 後莫更善此財 若更善者 教其重罪耳 (냉수리비)

즉 별도로 교를 내려서 ‘말추와 사신지 이 두 사람은 뒤에 다시는 이 재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만약 다시 말하는 자가 있으면 중죄를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중성리비의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과 대비되는 측면도 있다. 그것은 ‘敎’의 형식이 아니라 ‘白□’의 형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白’은 사죄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sup>25)</sup> 국가의 사인이 앞에서와 같이 ‘습’하지 않고 ‘白’했다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랬을 때 역시 이와 비슷한 형태의 문장 구조가 보이는 남산신성비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辛亥年 二月 廿六日 南山新城作節 ㉔如法 以作後三年崩破者罪 敎事 ㉕爲聞敎 令誓事之 (남산신성비 공통)

밑줄 친 부분은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만든 지 3년 이내에 무너져 파괴되면 죄로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 서약케 하였다’라고 해석되었다. 그렇지만 ㉔ 부분을 ‘법과 같이, 만든 후 3년 안에 무너져 파괴되면 죄라고 교하신 일’로 해석하여 법 조항을 교로 반복하여 분명히 한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제기되었다.<sup>26)</sup> 그렇다면 ㉕ 부분은 ‘교를 듣고 맹세하게 하신 일’ 정도로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맹세시켰다는 것인데, 중성리비에서 사간지 사인이 사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비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를 빼앗은, 잘못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측의 신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재발 방지 조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다시 침탈할 우려가 있는 측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 또는 맹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두지 사간지와 일부지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다만 그들의 사인인 과서모리가 재발 방지의 서약을 대신한 것으로 이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신라에서는 맹세라는 행위가 큰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5) 김창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 사죄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김창석, 앞의 논문(2009), 384면).

26) 洪承佑, 2011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5~207면.



다. 냉수리비나 봉평비에는 소를 죽이는 의식이 나타나고 있는데,<sup>27)</sup> 그것이 盟誓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sup>28)</sup> 한편 남산신성비에서는 단순히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선포하는 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 서약시키고 있다. 중성리비의 경우에는 국가의 포고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시 침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측에서 그렇게 하면 국가가 죄를 줄 것이라는 말을 직접 맹세하게 하고 또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葛文王과 2인의 阿干支 또는 2인의 阿干支가 2인의 奈麻에게 敎(판결)를 내림.
2. 本牟子 2인이 (조사하여) 사죄었고, 爭人은 8인이었음.
3. 使人 2인이 (판결을 가지고 내려가서) 세상에 승함. 그 내용은 6인의 지방 유력인이 말한구체적으로 지목한, 두지 시간지궁과 일부지궁이 빼앗은 것을 지금 다시 모단벌취 작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었음.
4. (잘못을 저지른) 두지 시간지측의 사인 과서모리가 ‘만약 후세에 다시 말하면 (국가가) 큰 죄를 부여할 것이다’라고 입으로 사뤼(맹세함).
5. 典書가 이를 기록하고, 사뤼 심도리가 ~함(미상).

이상과 같이 중성리비는 교의 내용을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판결을 중심으로 그것에 참여한 사람, 판결의 내용과 재발 방지의 맹세까지를 기록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敎’ 자체보다는 ‘절차’를 기록했으며, 이와 같은 기록의 목적 역시 권리의 보장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비를 판례로서의 敎命을 기록한 비로 해석하여 교의 성문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sup>29)</sup> 그렇지만 이 분쟁의 해결에서 물론 중앙의 교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지만, 그 내용이 문서의 형태로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여러 행위들이 그것의 권리를 보장해 준 측면이 있다. 즉 문제가 되는 분쟁 대상물에 대해서도 그것이 문서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었고, 권리를 침탈할 수 있는 측의 사인이 맹세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교령이 명확하게 관리되면서 효력을 유지했다기보다는 교령에 따른 여러 절차를 통해서 효력이 유지되는 측면

27) ‘此七人 踪所 白了 事 煞牛 拔諸 故記’(냉수리비); ‘新羅 六部 煞斑牛…’(봉평비)

28) 門田 誠一, 2006 「角杯と牛殺しの盟誓 : 新羅の祭天儀禮とその周邊」 『古代東アジア地域相の考古學的研究』, 學生社, 259-263면

29) 김창석, 앞의 논문(2010).

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증성리비문은 단순히 교 자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정되고 내려지고 효력을 얻게 되는 절차를 기록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 3. 분쟁의 내용과 성격

2장에서는 敎의 내용, 즉 판결의 내용을 두지 사간지궁, 일부지궁이 빼앗은 것을 모단벌취 작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 분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분쟁의 당사자들과 대상물을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豆智 沙干支宮과 日夫智宮의 ‘宮’에 대해서는 발견 초기부터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첫째는 이것을 ‘宅’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다.<sup>30)</sup> 즉 사료에서 宮과 宅이 호환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sup>31)</sup> 여기에서의 宮 역시 宅, 저택,<sup>32)</sup> 나아가 귀족 가문, 그 재산을 관리하는 조직<sup>33)</sup>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둘째는 그것을 6부 내지는 왕족이 소유한 지방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다.<sup>34)</sup> 전덕재는 이를 일본 고대의 名代·子代와 같이 왕족에게 지급된 食品으로,<sup>35)</sup> 김창석은 이들이 소유한 田莊의 田畝 및 별궁의 기능을 하던 시설물<sup>36)</sup>로 보았다.

증성리비에 나오는 두 궁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奪’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후자의 견해에서도 궁이 저택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sup>37)</sup> 다만 문장 구조의 분석에서 그것을 빼앗긴 대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宮의 食品이나 그것을 관리하는 田畝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궁이 빼앗은 주체라고 했을 때 누군가의 저택이나 가문, 특히

30) 발견기념 심포지움에서 선석열, 이우태가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으며, 이문기, 하일식 등이 이를 발전시켰다.

31) 李基東, 1984 「新羅 金入宅考」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1~192면.

32) 이문기, 앞의 논문(2009), 25~26면.

33) 하일식, 앞의 논문(2009), 187~188면.

34) 발견기념 심포지움에서 토론자로 나섰던 이성시, 김재홍 등이 제기하였고, 전덕재, 김창석, 이용현 등이 이를 수용, 발전시켰다.

35) 전덕재, 앞의 논문(2009), 112~120면.

36) 김창석, 앞의 논문(2009), 387~389면.

37) 전덕재도 일차적으로 宮이 왕자나 공주, 출궁한 태후나 후궁이 사는 저택을 의미한다는 것을 논증하였다(전덕재, 위의 논문(2009), 112~113면).

경제 주체로서의 가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두지 사간지와 일부지는 어떤 지위의 사람이었을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단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들의 집을 冢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 중 1인이 사간지라는 관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라 통일기에 고위 귀족의 저택을 ‘金入宅’으로 지칭하고, 그 태호로서 그 인물 또는 가문을 지칭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것을 모두 冢으로 지칭하는 것이 가능했을지는 의문이다.<sup>38)</sup> 또 冢의 용례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왕궁, 관사, 정자, 그리고 왕자나 공주, 출궁한 태후나 후궁이 거처하는 저택을 궁으로 지칭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sup>39)</sup> 그 가운데 마지막 것이 두지 사간지궁, 일부지궁과 관련된다 할 수 있다. 즉 두지 사간지와 일부지는 가깝든 멀든 왕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중 1인이 사간지를 칭하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아예 관등이 없다는 점이다. 신라 17관등제에서 사간지, 즉 사찬은 8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성리비에 나오는 사간지 역시 중급 정도의 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sup>40)</sup> 이와 같은 관등은 궁을 소유한 위상과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501년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사간지의 위상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7관등제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sup>41)</sup> 501년 단계에 어느 정도의 관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각각의 위상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금석문, 즉 중성리비(501), 냉수리비(503), 봉평비(524) 정도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특히 냉수리비와 봉평비는 왕과 6부의 고위 인사들이 공론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의 고위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3〉은 중성리비, 냉수리비, 봉평비에 등장하는 6부인을 정리한 것이다.

38)宅 중에 冢으로도 지칭된 사례는 梁宅-梁宮, 沙梁宅-沙梁宮, 本彼宅-本彼宮, 月遊宅-離宮, 板積宅-積板宮 정도인데 이들은 모두 왕과 모종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李基東, 앞의 논문(1984), 191~192면; 전덕재, 앞의 논문(2009), 112면).

39) 전덕재, 2009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218~226면.

40) 이문기, 앞의 논문(2009), 25면.

41) 17관등제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냉수리비(503)와 봉평비(524)의 발견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즉 냉수리비문에는 非干群 관등 중에 奈麻만 나오는 데 비하여 봉평비문에는 대부분의 비간군 관등이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냉수리비와 봉평비 사이의 시기에 17관등이 완비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盧泰敦, 1989 「蔚珍鳳坪新羅碑와 新羅의 官等制」 『韓國古代史研究』 2; 奎德在, 1996 『新羅六部體制研究』, 一潮閣; 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중성리비의 발견 이후에 이루어진 관등제 관련 연구로는 주 1)에 언급된 것 외에 아래와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다. 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 洪承佑, 앞의 논문(2011).

〈표 1〉 중성리비 6부인 일람

직책	부명	인명	관등
敎를 내림	喙部	習智	阿干支
	沙喙	斯德智	阿干支
敎를 받음	沙喙	尒抽智	奈麻
	喙部	牟智	奈麻
本牟子	喙	沙利	
		夷斯利	
爭人	喙評	公斯弥	
	沙喙	夷須	
	牟旦伐喙	斯利	壹伐
		皮末智	
	牟波喙	柴	干支
		弗乃	壹伐
金評	口	干支	
使人 奈蘇毒只道使	喙	念牟智	
	沙喙	鄒須智	
		豆智	沙干支
		日夫智	
沙干支 使人		果西牟利	
典書		与牟豆	
	沙喙	心刀里口	

〈표 2〉 냉수리비 6부인 일람

직책	부명	인명	관등
敎를 내림	沙喙	至都盧	葛文王
		斯德智	阿干支
		子宿智	居伐干支
	喙	尒夫智	壹干支
		只心智	居伐干支
	本彼	頭腹智	干支
斯彼	暮斯智	干支	
典事人	沙喙	壹夫智	奈麻
		到盧弗	
		須仇休	

	喙	(耽須道使) 心訾公	
	喙	沙夫	
		那斯利	
沙喙	蘇那支		

〈표 3〉 봉평비 6부인 일람

직책	부명	인명	관등
敎를 내림	喙部	牟卽智	寐錦王
	沙喙部	徙夫智	葛文王
	本波部	口夫智	干支
	峇喙部	美昕智	干支
	沙喙部	而粘智	太阿干支
		吉先智	阿干支
		一壽夫智	一吉干支
	喙(部)	勿力智	一吉干支
		愼宐智	居伐干支
		一夫智	太奈麻
		一尒智	太奈麻
		牟心智	奈麻
	沙喙部	十斯智	奈麻
		悉尒智	奈麻
處事大人	喙部	內沙智	奈麻
	沙喙部	一登智	奈麻
		男次	邪足智
居伐牟羅道使	喙部	比須婁	邪足智
悉支道使		牟洗	小舍帝智
悉支軍主	喙部	烏婁次	小烏帝智
書人		尒夫智	奈麻
		牟珍斯利公	吉之智
新人	沙喙部	若文	吉之智
	喙部	述刀	小烏帝智
立石碑人	沙喙部	牟利智	小烏帝智
		喙部	(博士)

이 세 비에서는 공통적으로 6부인 중에서도 韃부와 사韃부 인사만이 17관등 체계로 연결되는 관등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중성리비에서 이러한 관등을 보유한 인사는 모두 5명인데, 이 중 두 명의 아간지가 교를 내리고 두 명의 나머가 이를 받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문제의 두지 사간지이다.

다음으로 냉수리비를 보면, 교를 내리는 집단은 부를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韃부는 갈문왕-아간자-거벌간지, 韃부는 일간지-거벌간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韃부의 경우 지도로갈문왕 아래에 아간지와 거벌간지가 있었던 것이고, 韃부의 경우 당시에는 매금왕이 없었고 일간지와 거벌간지가 공론에 참여한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봉평비의 교 집단을 보면, 먼저 4부의 부장이 韃부, 사韃부, 본피부, 잠韃부의 순서로 나오고, 그 다음에 韃부, 사韃부의 태아간자-아간자-일길간지(사간지)-거벌간지-태나마-나마 관등의 보유자들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다. 이처럼 냉수리비와 봉평비에서는 부장의 위상을 갖는 인사들을 제외하면 韃부, 사韃부의 태아간자-아간자-일길간지(사간지)-거벌간지 관등 보유자들이 고위 인사로 공론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약간 돌출적인 존재가 바로 냉수리비의 '喙 尙夫智 壹干支'이다. 그의 관등이 韃부, 사韃부의 다른 인사에 비하여 독보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일간지를 매금왕이 없는 상태에서 韃부 부장의 위상을 갖는, 오히려 본피·사피부의 干支에 해당하되 그 앞에 壹(-)을 붙인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sup>42)</sup> 물론 이것은 봉평비에서 '本波部 □夫智'의 관등을 '五干支'로 판독한 견해<sup>43)</sup>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sup>44)</sup> 그렇지만 냉수리비의 일간지가 당시 韃부에서 부장의 위상을 갖는 특수한 존재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韃부, 사韃부에서 부장이 아닌 위상을 갖는 고위 인사가 가질 수 있는 관등은 대체로 아간지가 가장 높았던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상위 분화한 태아간지를 칭하기도 했을 것이다.<sup>45)</sup> 그리고 그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한 인사들은 중성리비와 냉수리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머의 관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당시 사간지는 韃부, 사韃부 내부에서는

42) 洪承佑, 앞의 논문(2011), 161-165면.

43) 심현용, 2009 「고고자료로 본 5-6세기 신라의 강릉지역 지배방식」 『문화재』 42-3, 21면.

44) 하일식, 2011 「주보돈, 「울진봉평신라비와 신라의 동해안 진출」에 대한 토론문」 『울진 봉평리 신라비와 한국 고대 금석문』(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개관기념 학술대회), 한국고대사학회, 54면.

45) 이처럼 아간지가 태아간지로 분화하게 된 것도 아간지와 그 상위 관등 사이에 어떤 계선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아간지, 일길간지 다음의 상당히 고위 관등에 속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46)</sup>

한편 일부지 같은 경우에는 관등을 칭하지 않았는데, 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왕족일 가능성이 크며, 그가 관등을 갖지 않은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고위 관등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한다.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지 사간지와 일부지가 왕족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그 중 두지의 경우에는 궤부·사궤부 내부에서 상당히 높은 관등을 부여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왕실과 친족 관계에 있는 궤부 혹은 사궤부 내의 고위 인사로 볼 수 있을 것이며, 冏은 이들을 중심으로 한 가문, 그 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47)</sup>

다음으로 빼앗긴 측, 즉 ‘牟旦伐喙 作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모단벌궤’는 일단 ‘모단벌’과 ‘궤’로 분리할 수 없으며 붙여서 ‘모단벌궤’로 읽어야 한다. 그렇다면 爭人 집단의 인명 나열에서 알 수 있듯이 궤, 사궤, 본과궤와 같은 6부의 하나, 구체적으로 모랑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sup>48)</sup>

그렇다면 모단벌궤의 작민에게 돌려주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 비가 발견된 지역, 즉 흥해 지역에 있는 무엇인가를 두 궁에서 빼앗았다면 그것은 모단벌궤의 작민이 경작하는 토지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시대는 인력에 비하여 토지가 부족한,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왕경 인근의 좋은 경지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sup>49)</sup> 분쟁의 대상인 토지는 전통적으로 모단벌궤에서 점유한 경작지로

46) 물론 이 시점에 이별찬·이찬·잡찬·파진찬에 해당하는 관등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양서』 신라전은 법흥왕 8년(521)에 파진찬 사신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子賁牟支와 齊牟支(壹牟支)가 나오고 있어 舒弗那(이별찬)와 이찬이 당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삼국사기』에 나오는 것과 같이 파진찬 역시 이른 시기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들은 태아간지, 즉 대야찬 이하와 성격을 달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금석문에 나오는, 기타 4부의 부장이 칭하는 干支가 사서에는 이찬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는데(全德在, 앞의 책(1996), 45면), 실제로 각 부의 부장들이 이찬 정도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삼국사기』 祇摩尼師今 즉위조의 기록대로 酒多, 즉 서불한은 실제로 이찬, 즉 당시 간지 중에 부여한 지위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잡찬은 이 시기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파진찬은 여기에서 그 성격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실성마립간 당시 미사흔이 정도의 인물이 ‘波珍干岐’를 칭하고 있었다는 점(전덕재, 앞의 논문(2010), 75-79면)에서 특별한 지위의 인물에게 부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7) 이와 같이 왕실에서부터 근친 왕족, 일부 근신이 왕실을 중심으로 기타 왕족과 귀족 이 왕실과 별도로 독립적인 가문, 경제 단위를 이루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신라의 친족 집단, 사회 조직에 대한 연구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었다. 윤선태는 마립간기에 들어 왕위가 부자 상속 방식으로 계승되면서 왕족에서부터 가계가 분화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다른 지배 세력도 그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고 하였다(尹善泰, 1992 「新羅 骨品制의 基礎集團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碩士學位論文, 40-41면).

48)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덕재가 상세하게 논증하였다(전덕재, 앞의 논문(2009), 103-107면).

파악할 수 있다. 이 농지는 6부의 하나로서 모단별훼가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그 작민들이 경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때 작민은 어떤 지위에 있었을까? 두 궁의 점탈은 ‘작민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작민은 배제한 채 토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작민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단별훼의 구성원일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모단별훼의 경지를 경작하는 단순 예속민일 가능성이다. 두 궁에서 토지를 점탈하면서 작민을 축출했다는 점에서 ‘모단별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지배 집단으로서 6부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는 당시 흥해 지역의 위상과 관련이 있는데, 이 지역은 분쟁 대상을 명시한 지방민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6부가 아닌 지방에 속하는 곳이었다. 여기에 있는 모랑별훼의 경지를 경작하는 민들은 대체로 예속민일 가능성이 크다.<sup>50)</sup> 다만 모단별훼와 무엇인가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두 궁에서는 이들까지 침탈하지 못하고 일부 경지에 대해서만 점탈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판결에서는 빼앗은 것을 ‘모단별훼 작민’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모단별훼의 권리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sup>51)</sup>

그렇다면 본 사건은 왜부 또는 사왜부 소속의 왕족 출신 귀족 가문에서 전통적으로 모단별훼, 혹은 그 작민이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점탈한 것이 된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신라 6부의 성립 과정과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sup>52)</sup> 6세기 초까지도 6부는 신라의 정치 운영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즉 왕이 단독으로 교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6부의 부장들이 공론하여 교를 내리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놀지마립간 이후에는 왕이 왜부와 사왜부의 2부를 장악하면서 왕

49) 흥해별은 의동별, 안강별과 함께 경주 인근의 가장 큰 경지에 해당한다(배용일, 앞의 논문(2009), 79~81면). 당시 농업 조건을 알기 어렵지만 이러한 지역은 일찍이 6부에서 직속 경제 기반으로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흥해 옥성리고분군의 양상이 주목되는데, 이 고분군은 4세기에 들어 수장묘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있어, 6부 세력의 직접 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이한상, 2000 『4세기 전후 신라의 지방통제방식 : 분묘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7).

50) 삼국 초기의 부 내부에는 하위 자치 집단인 部內部들이 있었고, 집단 예민을 예하에 두기도 하였다(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22~134면). 모단별훼 작민의 경우 모단별훼에 속한 집단 예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1) 중성리비에 보이는 분쟁은 실질적으로 두지 사간지궁, 일부지궁과 모단별훼 사이의 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단별훼의 작민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고, 사간지의 사인이 재발 방지의 맹세를 하는 등 당사자들이 전면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롭다.

52) 奎德在, 앞의 책(1996), 1~6면 참조.



권을 신장시켜 나가고 있었다.<sup>53)</sup> 6세기 초의 금석문을 보면, 휘부·사휼부에서는 그 부장인 매금왕·갈문왕과 함께 태아간지, 아간지 등 분화된 관등을 부여받은 다수의 인사가 공론에 참여하고 있다(〈표 2~3〉 참조). 반면 본피·사피·잠휼부에서는 간지를 칭하는 자 1인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며, 한기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즉 휘부와 사휼부에서는 왕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왕족, 또는 근신 세력이 분화된 관등을 부여받으면서 여타 부의 부장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신라의 정치가 6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주변 지역의 경제적 이권 역시 부를 단위로 분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모단벌훼 역시 왕경 내부의 근거지 외에도 인근 지역의 주요 경작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왕(마립간)이 장악하고 있는 휘부·사휼부 내부에서 왕족이나 왕의 근신 등이 고위 관등을 부여받으면서 점차 귀족 가문으로 변모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을 비롯한 이러한 존재들은 자신의 家系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경제 단위를 이루면서 그 경제적 기반을 확대해 나갔을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왕경 주변의 좋은 경지들은 이미 6부에 의해서 분점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 주체들은 적어도 왕경 인근에서는 자신의 경제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6부가 차지하고 있는 왕경 주변의 경지를 침탈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성리비에 나타난 분쟁은 바로 휘부·사휼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귀족적인 가문이 전통적으로 6부가 보유한 왕경 인근의 경제 기반을 침탈해 나가는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쟁에서 중성리비에 나타난 판결은 모단벌훼의 전통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이미 6부 사이의 불균형이 커지고, 공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도 나타나고 있었지만, 봉평비의 ‘신라 6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6부 체제를 명목상 이어나가고 있었다. 즉 이와 같은 판결 역시 전통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른 두지 시간지와 일부지에 대한 처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근본적인 한계가 된다. 다만 그의 사인이 ‘앞으로 (그것에 대한 권리를) 다시 이야기한다면 죄를 줄 것이다’라고 일종의 맹세를 하였을 뿐이다.

53) 奎德在, 위의 책(1996), 63~70면.

어쨌든 신라 국가는 분쟁에 대한 판결[敎]을 내리고 여기에 관여한 중앙 인사들의 명단, 분쟁지를 명시한 지방 유력인들의 명단, 그리고 다시 권리 주장을 앉혔다는 시간지 측 인사의 발언을 절차에 따라 기록한 비를 분쟁의 대상이 된 흥해 지역의 경지 옆에 세움으로써 모단벌훼의 그것에 대한 권리를 보증해 주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2009년에 발견된 포항 중성리신라비는 대부분 글자가 판독되면서도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비문의 해석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敎의 내용이 어디까지이고, 果西牟利의 발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것이 교 자체를 기록했다기보다 교를 포함한 분쟁 해결 절차를 기록한 형식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첫 문장에서 교를 내렸지만, 그것이 노출된 것은 使人이 지방에 가서 명령[命]한 절차에서였다. 그것은 몇몇 그 지역 유력자들이 명시한, 豆智 沙干支官과 日夫智官이 빼앗은 것을 牟且伐喙 作民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었다.

기존의 논의에서 이와 같은 해석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게 된 것은 마지막 果西牟利의 재발 방지 발언을 냉수리비에서처럼 국가 권력의 임포로만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성리비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산신성비에 보이는 맹세[誓]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잘못을 저지른 沙干支 측의 使人이 앞으로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는 형식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성리비는 교 자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교가 내려지고 그에 따라 권리를 확인해주는 절차와 관련자의 행위를 기록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신라 사회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행위가 교 자체보다도 큰 효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해석했을 때 비에 나타난 분쟁의 내용과 성격은 더 분명해진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6部가 왕경 인근 지역의 경제적 권리를 분점한 상태에서 왕이 직접 장악한 喙部, 沙喙部 내부에서 새롭게 성장한 귀족 가문이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분쟁이었다. 즉 흥해 지역에 위치한 모단벌훼의 경지를 휘부

또는 사훼부 소속의 왕족 출신 귀족 가문이 점탈한 것이었다. 신라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전통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판결과 권리 인정의 절차를 담은 비를 세워 주었지만, 잘못을 저지른 측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성리비는 6부가 중심이 되는 체제에서 왕권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귀족 가문이 나타나는 단계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위치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포항 중성리신라비, 신라, 금석문, 맹세, 部

투고일(2011. 8. 2), 심사시작일(2011. 8. 3), 심사완료일(2011. 8. 17)

## 〈Abstract〉

The Form and Content of the Inscription  
of *Pohang Jungseongri Silla Stone Monument*

Park, Sung-Hyun \*

*Pohang Jungseongri Silla Stone Monument* was discovered in 2009 and has been studied for over 2 years. However, its inscription couldn't be understood because there are many lists of names and a few verbs. There is a *gyo* (教, king's order) in the inscription, but it has not been agreed on what the content of the *gyo* is.

I think that it is because the inscription is not the record of the *gyo* itself, but that of the procedure to resolve a dispute by the *gyo*. The *gyo* was issued in the first sentence, but the content of it was not revealed. That was proclaimed by two officials dispatched to the place where the troubled object was located. The content of it was that the houses of *Duji Saganji* and *Ilbuji* should return the something to the farmers of *Modanbeolwhe* (牟旦伐喙). In the latter part of the inscription, a servant of *Saganji* said, "If someone raises objection, he will be heavily punished." The words of the servant can be interpreted as a vow that his master would revive such a illegal act.

*Silla* was formed of 6 *bu* (部, tribes) and was operated by them. Each *bu* possessed farmlands around the capital. *Hwe-bu* (喙部) and *Sahwe-bu* (沙喙部) directly under the king got to have more power by the early 6th century. Some relatives and close subjects of the king were transformed into aristocrats. *Duji Saganji* and *Ilbuji* seems to had been aristocrats from the relatives of the king. The dispute in the inscription was that the rising aristocrats' families stole the farmland which *Modanbeolhwe-bu* had possessed. The judgement was to return the farmland immediately. However, the aristocrats weren't punished and their servant just vowed not to revive such a disseisin.

Key Words : *Pohang Jungseongri Silla Stone Monument*, *Silla*, vow, *bu*(部), aristocrat

---

\* Researcher,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